

#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지정기준

건설부 고시 제310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1. 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이하 방화재료라 한다)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서 그 성능을 확보하고 방화재료의 생산 및 유통을 합리화하여 사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2. 방화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가. 시험기관이 방화재료의 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업표준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시료를 제작할 때에는 시험기관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방화재료의 시험방법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 방화재료지정의 신청과 심사

가. 신청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자 또는 그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해당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건축공사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방화재료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심사

- 1) 심사내용은 방화재료 자체의 방화성능에 관한 사항과 동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2) 심사시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보고·설명할 수 있다.
- 3) 국립건설시험소장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조,

시공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 4. 지정의 공고와 효력

- 가. 국립건설시험소장은 3. 나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방화재료를 심사하여 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표준시방서(규격, 시공방법)를 포함한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나. 효력

- 1) 방화재료로 지정된 재료(이하 지정방화재료라 한다)의 효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방화재료가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이외의 경우에는 그 효력기간을 1년으로 하며, 건축재료의 제조 또는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방화재료의 효력은 1회에 한한다.
- 2)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지정방화재료의 효력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이전에 실시한 방화성능시험성적서를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3에

신청서류의 종류	기 재 사 항
① 방화재료 설명서	○ 재료설명서 (재료의 형상, 구성재료명, 재질, 성능등) 표준시방서,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의 영업개요	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경우 - 영업의 연혁 및 실적 - 자본금액 - 종업원수 - 조 직 - 제조시설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불필요) - 공장등록증 (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불필요) 나.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제조업자의 경우 -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사본 다.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의 경우 - 건축주 - 건축물의 위치 - 건축물의 연면적 - 건축물의 구조 - 공사기간
③ 품질관리 설명서	가. 방화재료의 품질기준 -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제조방법, 방화재료의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방법 및 기타 나. 방화재료의 공장검사 기준 (제조업자의 경우에 한함) - 제품검사 관계내용 - 시험설비 및 기타 다. 현장시공 검사기준 - 현장시공 시방관계 검사내용 및 기준
④ 방화성능 시험성적서	○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행한 방화성능 시험성적서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함)

의한 방화재료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지정방화재료가 지정내용과 다른 표면도장이나 화장재료의 첨부 또는 바탕재료에 따라 방화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방화재료로 보지 아니한다.

4) 지정방화재료는 당해 재료를 신청하여 이를 지정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정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지정의 표시**

가. 방화재료로 지정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국립건설시험소장지정 (지정번호)
(방화재료 구분)
(회 사 명)
(유효기간)

- 1) 글자체는 고딕체로 명료하게 판독될 수 있어야 한다.
- 2) (방화재료 구분)은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3) 표시방법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상기 증표의 첨부 또는 날인증으로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검사가능**

가. 품질관리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자가 지정방화재료를 제조할 때에는 다음의 자체검사 및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 및 공정관리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1) 재료의 검사
  - 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 3) 제품검사
- 나. 실적보고  
방화재료의 지정을 받은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에 매년도 생산 및 판매실적과 품질관리 상태에 대하여 당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립건설시험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  
국립건설시험소장은 가.에 정하는 품질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자체검사의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라. 현장검사  
건축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사의 종류 및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은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정하여야 한다.

**7. 지정의 취소**

국립건설시험소장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고시하고, 그 사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지정방화재료의 생산(또는 판매)이 중지된 경우
- 2) 지정방화재료의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 3) 신청인이 지정신청을 반납하는 경우
- 4) 기타 지정방화재료의 성능이 확보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 ①(시행일)이 고시는 89. 2.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2 및 3의 규정은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고시의 폐지등)건설부 고시 제242호(82. 7. 2) 건축물내장 재료의 연소가스유행성 시험방법은 89. 2. 24자로 폐지하고, 건설부 고시 제94호(80. 4. 8)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안연재료의 기준중 준불연재료 및 안연재료에 관한 사항은 89. 2. 24자로 이를 삭제한다.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 무란새

#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76-0123-4